

제411회 임시회

'23. 9. 8.(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정일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8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3. 제안이유

-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근거로 폭넓게 규정함(안 제2조)
- 피해자 지원내용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조)
-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규정함(안 제9조)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함(안 제1조, 제6조~제7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규정하며,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자구수정 내용 >

조문	개정사항	비고
제1조	사항을규정함으로써 →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띄어쓰기
제6조제1항제5호	유관기관 → 유관 기관	띄어쓰기
제7조제2항	관계기관 → 관계 기관	띄어쓰기
제8조	① → ⊕	하위번호가 하나만 존재해 삭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 이름 띄어쓰기

-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부터 제14조의3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등 관계법률을 근거로 디지털성범죄를 폭넓게 규정하여, 동 조례에서 예방 및 방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사이버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어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를 포함하고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포함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은 디지털성범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 제1항제4호는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영상물 등을 유포하고 삭제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의미전달하기 위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현행) 영상 등 유포 및 삭제 지원 → (개정안) 영상 등 삭제 지원 및
- 안 제9조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업무 관련자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업무 관련자에 대한 교육 등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겠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의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법령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참고1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피해자 지원건수

[단위: 명, 건]

기간	피해자 수 (명)	지원 건수 (건)				
		합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 지원연계
2018년	1,315	33,921 [100.0%]	28,879 [85.1%]	4,787 [14.1%]	203 [0.6%]	52 [0.2%]
2019년	2,087	101,378 [100.0%]	95,083 [93.8%]	5,735 [5.7%]	500 [0.5%]	60 [0.1%]
2020년	4,973	170,697 [100.0%]	158,760 [93.0%]	11,452 [6.7%]	445 [0.3%]	40 [0.02%]
2021년	6,952	188,083 [100.0%]	169,820 [90.3%]	17,456 [9.3%]	708 [0.4%]	99 [0.1%]
2022년	7,979	234,560 [100.0%]	213,602 [91.1%]	19,259 [8.2%]	1,525 [0.6%]	174 [0.1%]

□ 피해자 현황

[단위: 명]

기간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 미상
2021년	여성	5,109 [73.5%]	1,194 [17.2%]	1,090 [15.7%]	367 [5.3%]	91 [1.3%]	42 [0.6%]	2,325 [33.4%]
	남성	1,843 [26.5%]	287 [4.1%]	371 [5.3%]	104 [1.5%]	81 [1.2%]	96 [1.4%]	904 [13.0%]
	계	6,952 [100.0%]	1,481 [21.3%]	1,461 [21.0%]	471 [6.8%]	172 [2.5%]	138 [2.0%]	3,229 [46.4%]
2022년	여성	6,007 [75.3%]	1,211 [15.2%]	1,093 [13.7%]	430 [5.4%]	131 [1.7%]	51 [0.6%]	3,091 [38.7%]
	남성	1,972 [24.7%]	212 [2.6%]	357 [4.5%]	104 [1.3%]	65 [0.8%]	71 [0.9%]	1,163 [14.6%]
	계	7,979 [100.0%]	1,423 [17.8%]	1,450 [18.2%]	534 [6.7%]	196 [2.5%]	122 [1.5%]	4,254 [53.3%]

참고2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현황

□ 피해자 지원건수

(단위:명, 건)

연도	피해자수 (명)	지원 실적				
		합계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 료 지원연계
2022	85	1,337	947	295	88	7
2023 (8월말)	122	405	296	77	32	-

□ 피해자 현황

(단위:명, 건)

연도	성별	소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상
2022	여성	82	40	22	5			15
	남성	3	2	1				
	총계	85	42	23	5			15
2023 (8월말)	여성	110	27	32	9	2	1	39
	남성	12	2	5				5
	총계	122	29	37	9	2	1	44